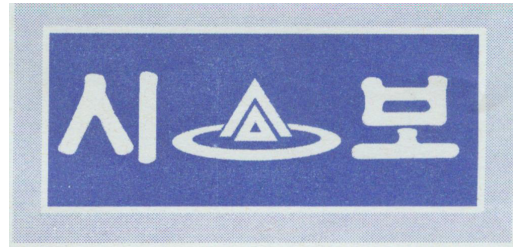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499호 2013. 6. 17.(월)

【조 례】

제86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866호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4
제867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868호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869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870호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4

【훈 령】

제218호	공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40
-------	--------------------------------	----

【고 시】

제2013-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53
제2013-74호	한방웰니스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제1회) 승인 고시	54
제2013-75호	월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56
제2013-76호	정안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64
제2013-78호	공주시 금연구역 변경 지정고시	73
제2013-79호	검상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81

【공 고】

제2013-853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7
제2013-863호	도시계획시설(웅진백제역사문화관)사업 완료 공고	100

회 람							
--------	--	--	--	--	--	--	--

공주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5. 30.)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6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86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을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근무하는 자”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공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 ----- -----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p> <p><신 설></p>	<p>제3조(장려수당) ----- ----- -- 따라 ----- ----- ----- ----- --- 근무하는 사람----- ----- -----.</p> <p>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공주시의 관할구역과 다</p>

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
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
급한다.

공주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5. 30.)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6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866호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공주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공주시에 주소지를 가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선·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 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의 방과 후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8.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프로그램 진행비
2. 이용 아동 급식비·간식비
3.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환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3. 아동복지 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 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 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
2.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3.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4.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5. 센터 구성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6. 센터 운영 사업 평가
7. 방과 후 아동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8. 아동급식 지원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해당 분야 대학교수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5.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관계자

7.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보며, 사업비의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5. 30.)에서 의결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6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867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허가, 기타”를 “인가·허가, 그 밖의”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1인”을 “1명”으로, 같은 항 단서 중 “동일사항”을 “같은 사항”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건”을 “여러 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사전에”를 “미리”로, “첨부하게 함으로서”를 “붙이게 함으로써”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를 “해당 법령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자신”을 “자신”으로,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를 “따라 신고 · 신청 · 등록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 · 소대장”을 “중대장 · 소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된 때”를 “해당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대하여는 이면”을 “대해서는 뒷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 창구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 표(제5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삭제)			
(1) (삭제)			
(2) (삭제)			
2.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500	
3.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경력, 퇴직)증명	1통	400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2) 부채자사실확인	1통	900	
(3) 소유사실확인	1통	800	
(4) 실수요자사실확인	1통	700	
(5)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1통	700	
(6) 관상수목자가사실확인	1통	3,000	
(7) 풍수해등으로인한 피해사실확인	1통	3,000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1필지 건축선측량	1필지	5,000	
(2) 도로구축의경계선, 계획선또는 건축선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3,000	
(3) 표준주택설계도면	1필지	1,5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2010. 01. 04.			
(2) 미과세증명	1통	800	
(3) 세목별과세증명	1통	800	
(4) 징수유예증명	1통	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1) (삭 제)			
(2) (삭 제)			
8.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공부등에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채무불이행자열람, 등사(단,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계류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료)	1통	500	
(3)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청구	1통	600	
<u>9.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u>			
(1) 주민등록 등·초본	1통	200	400원 → 200원
(2) 토지(임야) 대장	1필지	300	500원 → 300원
	1장초과 시마다	100	100원 → 1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500	800원 → 500원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700	1,000원 → 700원
(5) 건축물대장	1통	300	500원 → 300원
(6) 자동차등록원부	1통	200	300원 → 2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관내)	1통	300	500원 → 300원
(8) 건설기계등록원부(관외)	1통	1,000	1,500원 → 1000원
(9) 농지원부	1통	700	1,000원 → 700원
(10)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통	500	800원 → 500원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 규	1건	5,000	
○ 갱신 또는 기간연장 (개정 '10.12. 27.)	1건	3,000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1필지	800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동)	1주택당	800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호)	1주택당	80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칼라발급	1,000 1,500	
(6)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신청	1건	800	
2. 회계관계			
(1) 삭제(04. 9. 24)			
(2)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1,000만원이상)	1건	10,000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대형점포(시장)개설등록 및 변경신고	1건	20,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4) 석유판매업(일반 ·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1건	3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7)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30,000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	
(1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10,000	
(12)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3)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4) 소음 · 진동배출 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15) 소음 · 진동배출 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1건	5,000	
4. 건설관계			
(1) 삭 제(00. 5. 25.)			
(2) 사설개도허가 및 측수변경허가 신청	1건	3,500	
(3)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 점· 사용)허가		공사비의1,000 분의 1(용지 및 보상비 제외)	
(4) 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	1건	1,000	
(5)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	
(6) 소하천 점용 · 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7)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5. 보건사회관계			
(1)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1건	5,500	
(2)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1건	3,000	
(3) 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40,000	
(4)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5)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30,000	
(6)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7)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10,000	
(9)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1건	10,000	
(10)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1건	10,000	
(11)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800	
(12) 의료기관 개설 허가	1건	10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40,000	
(14)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15)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청	1건	40,000	
(16)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신고	1건	5,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1건	20,000	
(6)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1건	5,000	
(7)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u>1건</u>	20,000	
(8)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u>1건</u>	10,000	
7. 전기요금 감액신청시 주민등록에 의한확인	1건	500	
8. 부동산 중개업관계(신설 01. 5. 12)			
(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1건	800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800	
(3) 중개업분소 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4)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9. 체육시설업 관련			
(1)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u>(3)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u>	<u>1건</u>	<u>30,000</u>	신설
<u>(4) 농어촌 승마시설 변경신고</u>	<u>1건</u>	<u>10,000</u>	신설
10. 교통·차량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1건	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1건	1,500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1. 내수면어업 관계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 · 정치망어업)	1건	9,0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 · 종묘채포어업 · 연승어업 · 패류채취어업 · 낭장망어업 · 가망어업)	1건	5,000	
(4)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5)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6) 내수면 유해업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u>인·허가</u>,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u>징수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인가·허가</u>, 그 밖의 ----- ----- ----- ----- ----- 징수에 ----- ----- -----</p>
<p>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제2조(적용) ----- ----- ----- ----- ----- <u>따라</u> -----.</p>
<p>제3조(요율) ① (생략) ②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정보의 공개에 <u>소요되는</u>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2와 같다.</p>	<p>제3조(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제1항에 <u>따른</u>----- <u>드는</u> ----- -----.</p>
<p>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u>동일한</u>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u>수인을</u>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p>	<p>제4조(기준) ① ----- ----- <u>같은</u> ----- ----- ----- <u>여러 사람</u>----- -----</p>

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공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수의계약 견적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 1명-----
----- . -----

----- 같은 사항 -----
----- . -----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

----- 1명-----
----- . -----

③ ----- 여러 건 -----

----- . -----

제5조(징수방법) ① -----

----- . -----

----- 미리 -----

----- 붙이게 함으로 -----
----- 써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생략)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및 2급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경우에는 -----
----- . -----

----- 해당 법령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

--
2. -----
---- 자신-----
---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
3. ----- 중대장·소대장

4. (현행과 같음)
5. -----

----- 해당되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 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한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

② ----- 따라 -----
----- 대해서는 뒷면 -----
-----.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

공주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5. 30.)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6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868호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라 함은”을 “도로란”으로, “도로로서”를 “도로로써”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단점용이라 함은”을 “무단점용이란”으로, “호의 1”
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호의 1”을 “호
의 어느 하나”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를 “자에게는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를 납부”를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정할 때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절차에 관하여는”을 “절차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u>도로</u> <u>라 함은</u>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 는 <u>도로로서</u>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 한다.</p> <p>② 도로의 <u>무단점용이라 함은</u>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 조제1항 각 <u>호의 1</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 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과태료 부과 · 징수) ① 시 장은 <u>정당한 사유없이</u>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u>호의 1</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u>자</u>에 대하 여 <u>2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 과 · 징수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 해하는 행위</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에는 <u>당해</u> 위반행위를 조사 · 확</p>	<p>제2조(정의) ① ----- <u>도로</u> <u>란</u> ----- <u>도로로써</u>----- ----- -----.</p> <p>② ----- <u>무단점용이란</u>----- ----- ----- ----- <u>호의 어느 하나</u>----- ----- -----.</p> <p>제3조(과태료 부과 · 징수) ① --- ----- <u>사유 없이</u> ----- ----- <u>호의 어느 하나</u> ----- <u>자에게는</u> <u>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u> <u>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해당</u> -----</p>

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납부 -----

-----.

④ ----- 제3항에 따라 -----

-----.

⑤ ----- 정 -----
할때에는 해당 -----

-----.

⑥ ----- 절차 -----
는 -----

-----.

제4조(시행규칙) ----- 시행 -----
에 -----
-----.

공주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5. 30.)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6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869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43조제
8항에 따라”로, “비용(이하“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로, “에 대하여”를 “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비용”을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를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로, “또는 시”를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를 “이 경우”로, “10년이”를 “5년 이상”으로 “시설물에”를 “공동주택에”로, “한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를 “한정하여 적용한다.” 로 한다.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의원”을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원대상 및”을 “지원대상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하면”으로,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을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과 관련하여”를 “시행에”로, “규칙으로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 ----- ----- --- 비용----- ----- --- 규정함----- ----- ---</p>
<p>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p>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 -----에 ----- -----.</p> <p>② ----- 제1항에 따라 ----- -----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 범위----- -----.</p>
<p>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p>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1. ~ 5. (생략)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외 공동시설

② (생략)

제5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 또는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
-----.

제4조(지원대상) ① -----

----- . 이 경우 -----

-----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

----- 제3조에 따른 -----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사업무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② ----- 제1항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

③ -----
----- 범위-----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

② ----- 1명을 포함한 10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주시의회 의원-----

----- 풍부한 사람 -----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3. 기타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③ (생략)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③ (생략)

④ 위원장은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자료제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지원 대상의 -----
3.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② ----- 제1항에 따라 -----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인정하면 ----- 등을 참석시켜, 의

요구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주관과장, 서기는 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
-----.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

----- 1명-----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 시행
에 ----- 규칙
으로 -----.

공주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5. 30.)에서
의결된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6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870호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식 정보
를 습득하고,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주민(이 조례에서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공동체 형성과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및 보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매체를 말한다.
 - 가. 인쇄자료, 필사자료 또는 시청각자료
 - 나. 마이크로형태자료 또는 전자자료
 - 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라. 그 밖에 지식 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
3.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도서 대출·반납, 자료정리·보수, 시설 설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 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설치 및 등록

- 제5조(위치등) ①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및 운영자는 공동시설(마을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려면 해당 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이를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업무)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와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6.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기준) 작은도서관은 시설 및 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한다. 다만,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 등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면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운영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 및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인력과 자원봉사단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해당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운영하되, 개관 및 휴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관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5권 이하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의 업무수행
2.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예산의 운영
5. 도서 및 자료의 확보방안
6.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
7. 그 밖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운영자가 문화·교육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 주민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위탁운영) 시장은 시가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표창)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현저히 기여한 운영자·운영인력 또는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6월 17일

공주시 훈령 제218호

공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공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또는 관제실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서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신·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주시(본청 및 의회, 산하기관을 포함한다)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CCTV와 새로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CCTV의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CCTV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책임자의 지정) ① CCTV 총괄책임자는 부시장(개인정보보호책임자)으로 하고, CCTV 설치목적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개인 및 영상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등

제7조(설치·운영계획 수립) 운영책임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7.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5. CCTV 구조물의 형태 및 색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공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9조(CCTV의 설치목적)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시장은 CCTV의 신규 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협의) CCTV 전담부서 이외의 기관 및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CCTV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② CCTV의 통합관리 등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흐름조사, 원거리 촬영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공주시 홈페이지, 공주시 시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내용을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CCTV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CCTV 유지보수) 시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해야 한다.

제16조(CCTV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운영책임자 또는 전담부서장은 주기적으로 CCTV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2조에 따른 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CCTV의 연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CCTV를 바꾸거나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CCTV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주경찰서, 공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CCTV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 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공주시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CCTV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⑥ 당연직 위원은 공주경찰서 담당과장, 공주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공주시 CCTV 전담부서장, 방범용 CCTV 담당 부서장, 교통단속용 CCTV 담당 부서장, 재난관리부서장으로 한다.
- ⑦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 통합관제센터장으로 한다.
- ⑧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⑩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28조(수집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의무) ①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관제요원을 대상으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CCTV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이 지나면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명 : 신관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신관동 오히우스)

2.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5-83

3. 사업주체

- 상 호 : 오히우징건설 대표 오연숙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1길 14(신관동)

4.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5. 사업계획 변경내용

○ 분양구분	기존	일반공급	○ 대지면적	기존	1,169.1㎡
	변경	변경없음		변경	변경없음
○ 건축면적	기존	492.92㎡	○ 연 면 적	기존	2,669.1㎡
	변경	변경없음		변경	변경없음
○ 건 폐 율	기존	42.16%	○ 용 적 율	기존	218.19%
	변경	변경없음		변경	변경없음
○ 건설규모	기존	아파트 1동(원룸형)	○ 세 대 수	기존	92세대
	변경	변경없음		변경	변경없음
○ 사업기간	기존	2012.06.28 - 2013.03.30			
	변경	2012.06.28 - 2013.11.30			
○ 사 업 비	기존	3,552,000천원	○ 비 고		
	변경	변경없음			

6.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고 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시행 중인 한방웰니스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제1회)을 승인하고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17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한방웰니스권역 종합정비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한천리 일원
 - 나. 면 적 : 12.3km²
 -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시설,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4. 사업비 소요액 : 5,549백만원 (금회승인 4,251백만원)

5. 금회 승인 대상사업 내용

기능별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4,251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계	2,014		
	생명건강복지문화센터	1,187	2층 1동 연면적 429.6㎡	
	생명건강테마공간	281	주차장, 연못, 조경 등	
	홍길동과함께하는 등산로	36	등산로 산약초식재 2.76km	
	마을회관 리모델링	172	2개소(내산2리, 한천리 마을회관)	
	꽃내음 쉼터	112	2개소(내산2리, 한천리)	
	뜸발안길정비	226	마을안길 7개소 확포장(L=2.5km)	
소득증대	소계	516		
	약초체험학습장	71	초가정자 1개소, 수목명패 등	
	생명건강테라피	445	1층 1동 연면적 124.7㎡, 조경 등	
경관개선	소계	200		
	마을주변 경관정비	49	생울타리 조성, 산석돌담 L=120m	
	권역상징물 안내시설	151	상징조형물, 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등	
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	432	교육, 홍보,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	
용지매수	용지매수비	330	생명건강복지문화센터, 꽃내음쉼터	
제경비	소계	759		
	사업관리비	486	기본계획, 설계, 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예비비	273		

6. 사업 예정기간 : 2011년 ~ 2015년(금회승인 : 2011~2014년)

7.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8.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9. 기타 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5도2촌과 ☎ 041-840-8693)

월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공주시 고시 제2012-69호(2012.06.19.)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월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월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변경 없음)

명 칭 : 월미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440번지 일원

나. 면 적 : 149,527.9m²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우리산업개발(주) 대표 신흥섭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당 초 : 2008년 ~ 2011년 12월 31일

변 경 : 2008년 ~ 2013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물류·유통시설

7.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면 적		149,527.9		149,527.9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86,335.5		86,335.5	57.7	
물류·유통시설용지		33,457.2		33,457.2	22.4	
지 원 시 설 용 지	소 계	2,429.1		2,429.1	1.6	
	근린생활시설	988.9		988.9	0.7	
	주 차 장	982.5		982.5	0.6	주차장 2개소
	관 리 실	457.7		457.7	0.3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7,279.9		17,279.9	11.6	
	도 로	16,321.8		16,321.8	11.0	
	오 · 폐 수 처 리 장	539.0		539.0	0.3	
	유 수 지	419.1		419.1	0.3	
녹 지 시 설 용 지	소 계	10,026.2		10,026.2	6.7	
	완충녹지	10,026.2		10,026.2	6.7	

나. 토지이용계획도 : 게재 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 (변경 없음)

□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월미 농공단지 지구내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49,527.9	-	149,527.9	100.0	
관 리 지 역	149,527.9	-	149,527.9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149,527.9	-	149,527.9	-	

2)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주(005)	월미농공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	월미동	149,527.9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주(005)	월미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공주시 월미동 440번지 일원	149,527.9	-	149,527.9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8	8	1,386.1	1,386.1	16,321.8	16,321.8		
일 반 도 로	중로	소 계							
		1 류							
		2 류	1	1	663.7	663.7	10,174.8	10,174.8	
		3 류							
	소로	소 계							
		1 류	5	5	543.6	543.6	5,257.2	5,257.2	
		2 류							
3 류		2	2	178.8	178.8	889.8	889.8		

■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3.7	381-2답	432장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6.6	중로2-1	소로3-2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0.0	중로2-1	산46-1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5.3	중로2-1	419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01.4	중로2-1	산4-6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50.3	중로2-1	329-1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2.2	소로1-2	산3-1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2	3	특수도로	46.6	소로1-3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농공단지		

2) 주차장(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C1-1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월미동 434번지	556.9		556.9		
기정	C2-1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월미동 445번지	425.6		425.6		

3) 공간시설

■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E1-1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453번지	753.5		753.5		
기정	E1-2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452번지	660.9		660.9		
기정	E1-3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451번지	1,030.0		1,030.0		
기정	E1-4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448번지 일원	4,939.7		4,939.7		
기정	E1-5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455번지	2,439.3		2,439.3		
기정	E1-6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454번지	202.8		202.8		

4) 방재시설계획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1-2	우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443번지 일원	419.1		419.1		

5)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오·폐수처리장)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1-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월미동 442번지 일원	539.0		539.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86,335.5		86,335.5		86,335.5	
A1	1	9,850.0	월미동447번지	9,850.0		9,850.0	
A2	1	7,172.2	월미동 441번지	7,172.2		7,172.2	
A3	1	34,962.4	월미동 440번지	32,675.0		32,675.0	
	2		월미동 439번지	2,287.4		2,287.4	
A4	1	27,288.5	월미동 432번지	27,288.5		27,288.5	
A5	1	7,062.4	월미동 437번지	2,246.9		2,246.9	
	2		월미동 436번지	1,853.7		1,853.7	
	3		월미동 435번지	2,961.8		2,961.8	

2) 물류·유통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3,457.2		33,457.2		33,457.2	
B1	1	26,446.0	월미동 433번지	26,446.0		26,446.0	
	2	3,954.6	월미동 443-1번지	3,954.6		3,954.6	
B2	1	3,056.6	월미동 438 번지	3,056.6		3,056.6	

3) 지원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429.1		2,429.1		2,429.1	
C1	1	556.9	월미동 434번지	556.9		556.9	
C2	1	1,872.2	월미동 445번지	425.6		425.6	
	2		월미동 446번지	457.7		457.7	
	3		월미동 444번지 일원	988.9		988.9	

4) 공공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895.4		958.1		958.1	
D1	1	895.4	월미동 442번지 일원	539.0		539.0	
	2		월미동 443번지 일원	419.1		419.1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1 ~ A5-3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공업지역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중분류 (코드번호)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1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8조)					
높 이	4층(25m) 이하					

■ 물류·유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1 ~ B2-1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53-5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물류정책기본법 제2종에 의한 물류시설 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창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1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8조)		
		높 이	4층(25m) 이하		

■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2-2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53-5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공업지역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2-3		건폐율	7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1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8조)	
		높 이	4층(25m) 이하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 가)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공주시 월미동 368-5번지 일원	◦ 진입도로 (15m) 지정	◦ 설치위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2. 행위의 제한

월미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안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공주시 고시 제2012-116호(2012.10.01.)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정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월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변경 없음)

명 칭 : 공주정안2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나. 면 적 : 294,921.3m²

3. 농공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 대표 김인배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당 초 : 2007년 ~ 2011년 6월 30일

변 경 : 2007년 ~ 2013년 10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94,921.3		294,921.3	100.0	
산업시설용지	222,935.7		222,935.7	75.6	
지원시설용지	1,845.2		1,845.2	0.6	
공공 지원 시설	소 계	8,646.0	8,646.0	2.9	
	주 차 장	2,893.0	2,893.0	1.0	
	공 원 (체 육 시 설)	3,280.2	3,280.2	1.1	
	배 수 지	2,472.8	2,472.8	0.8	
녹지 용지	소 계	21,974.7	21,974.7	7.4	
	완 충 녹 지	17,779.7	17,779.7	6.0	
	유 수 지	4,195.0	4,195.0	1.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8,807.3	38,807.3	13.3	
	도 로	29,682.9	29,682.9	10.2	
	오 · 폐 수 처 리 장	3,323.0	3,323.0	1.1	
	원 형 보 전 녹 지	5,801.4	5,801.4	2.0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712.4	712.4	0.2	
	구 거	387.3	387.3	0.1	
	도 로	325.1	325.1	0.1	

나. 토지이용계획도 : 게재 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 (변경 없음)

□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정안2농공단지 지구내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294,921.3	-	294,921.3	100.0	
관 리 지 역	294,921.3	-	294,921.3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294,921.3	-	294,921.3	-	

2)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정안2농공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294,921.3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정안2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294,921.3	-	294,921.3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2,050	29,682.9	2	300	5,160.4	5	1,661	23,947.3	1	89	575.2
중로	4	1,616	25,981.5	1	198	4,074.2	3	1,418	21,907.3	-	-	-
소로	4	434	3,701.4	1	102	1,086.2	2	243	2,040.0	1	89	575.2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198	중로1-A	소로2-1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412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176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830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2	중로2-3	산10-1입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0	중로1-1	중로2-3	보행자 전용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3	중로2-3	산2-4입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9	중로2-3	295-3입	일반도로	농공단지내	-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⑤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3번지	1,596.6	-	
기정	1-④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1번지	1,296.4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③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10번지 일원	1,239.4	-	
기정	6-⑤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25번지 일원	2,040.8	-	

나)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⑧	녹지	완충녹지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3,465.5	-	1-⑤는 유수지와 중복결정
	4-②				12,469.9		
	6-⑧				1,621.4		
	6-⑨				222.9		
	1-⑤				4,195.0		
기정	3-⑦	녹지	원형보전 녹 지		2,064.6	-	
	6-⑦				3,736.8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⑥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정안면 사현리 519번지	2,472.8	-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6-⑥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정안면 사현리 528번지	3,323.0	-	

5)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⑤	유수지	저류지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222,935.7	
1	①	정안면 사현리 509번지	43,794.8	
	②	정안면 사현리 512번지	15,343.6	
2	①	정안면 사현리 515번지	57,468.3	
3	①	정안면 사현리 516번지	5,044.9	
	②	정안면 사현리 517번지	12,667.8	
	③	정안면 사현리 520번지	18,115.4	
	⑨	정안면 사현리 516-1번지	4,835.7	
	⑩	정안면 사현리 516-2번지	1,311.6	
4	①	정안면 광정리 324번지 일원	5,952.5	
5	①	정안면 사현리 522번지 일원	5,719.0	
	②	정안면 사현리 522번지	17,062.2	
6	①	정안면 사현리 523번지	10,569.3	
	②	정안면 사현리 524번지	7,025.2	
	③	정안면 사현리 526번지	12,287.1	
	④	정안면 사현리 527번지	5,698.3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3	④	정안면 사현리 514번지	1,845.2	

다) 공원(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3,280.2	
1	③	정안면 사현리 510번지	1,239.4	
6	⑤	정안면 사현리 525번지	2,040.8	

라) 원형보전녹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5,801.4	
3	⑦	정안면 사현리 518번지	2,064.6	
6	⑦	정안면 사현리 529번지	3,736.8	

마) 완충녹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21,974.7	
3	⑧	정안면 사현리 530번지	3,465.5	
4	②	정안면 광정리 325번지	12,469.9	
6	⑧	정안면 사현리 536번지	1,621.4	
6	⑨	정안면 사현리 538번지	222.9	
1	⑤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바) 주차장(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2,893.0	
1	④	정안면 사현리 511번지	1,296.4	
3	⑤	정안면 사현리 513번지	1,596.6	

사) 배수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3	⑥	정안면 사현리 519번지	2,472.8	

아) 유수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1	⑤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자) 오·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m ²)	
6	⑥	정안면 사현리 528번지	3,323.0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33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함
		건 폐 율	• 70% 이하 (시도조례 제53조 규정)
		용 적 률	• 150% 이하 (시도조례 제58조 규정)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0. 행위의 제한

정안2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주시 금연구역 변경 지정고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1. 지정취지

공주시 관내 도시(그린)자연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3년 6월 17일

3. 금연구역 지정고시 장소 및 범위 : 108개소

지정장소	개 소		지정범위	제외사유
	변경전	변경후		
계	147	108		
도시자연(근린),어린이공원	12	2	위치에 따른 공원 경계선 안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어린이놀이터	29	0	위치에 따른 놀이터 경계선 안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학교정화구역	65	65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23	23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택시승차대	1	1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가스충전소	17	17	표시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	

4.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 3만원
5. 홍보 및 계도기간 : 2013. 8. 21일까지
6. 단속개시일 : 2013. 8. 22부터
7. 고시방법 : 시보, 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등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건강과(☎840-87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금연구역 지정 고시 현황 1부. 끝.

금연구역 지정 현황

○ 도시, 그린공원·어린이공원 현황(위치에 따른 공원경계선안) - 12개소

연번	공원명	위치	면적(m ²)	제외사유
1	산성공원	금성동 10-2, 은개길 16-3	527.130	어린이공원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으로 금연구역 제외
2	신관공원	번영2로 40-12	44,070	
3	5호어린이공원	신관동 665	1,600	
4	7호어린이공원	신관동589-5	1,940	
5	8호어린이공원	번영2로 40-5	1,940	
6	9호어린이공원	공주대학로 23-19	1,600	
7	11호어린이공원	신관동21번지 일원	1,600	
8	13호어린이공원	번영2로 10-5	1,940	
9	14호어린이공원	금성동182-1	1,540.20	
10	15호어린이공원	미나리 3길 8	2,182.80	
11	16호어린이공원	신관동649-1	1,500.20	
12	17호어린이공원	공주대학로 17-45	1,629.50	

○ 어린이놀이터 현황(12,000m² 이상) - 29개소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제외사유
1	신관주공1단지어린이놀이터	번영1로 77-8	14,789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으로 금연구역 제외
2	신관주공2단지어린이놀이터	신금1길 10	14,833	
3	신관주공3단지어린이놀이터	신금1길30-3	34,772	
4	신관주공4단지어린이놀이터	신금2길 48	75,494	
5	신관주동5단지어린이놀이터	관골2길 24-29	39,017	
6	신관주공6단지어린이놀이터	관골2길 36	38,001.70	
7	현대1차아파트놀이터	공주대학로23-4	45,611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제외사유
8	새뜸현대3차아파트어린이놀이터	신금1길 72	81,530.95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으로 금연구역 제외
9	금흥동현대4차아파트어린이놀이터	신금1길 98	86,917.37	
10	현대홈타운5차아파트어린이놀이터	신금2길 17	46,475.52	
11	대아아이투빌어린이놀이터	신금2길 31	84,218.64	
12	대아곰나루아파트어린이놀이터	신금2길 47-1	42,784.94	
13	한빛아파트어린이놀이터	신금1길 62-15	30,920	
14	덕성그린시티빌어린이놀이터	관골2길 24-5	32,515	
15	대동다숲아파트1단지어린이놀이터	공주대학로 49-5	36,143.53	
16	대동다숲아파트2단지어린이놀이터	공주대학로 49-6	12,430.84	
17	삼환나우빌어린이놀이터	관골1길 31-8	59,780.61	
18	옥룡주공1단지어린이놀이터	우금티로 709-12	27,294	
19	옥룡주공2단지어린이놀이터	우금티로 709-11	40,389	
20	옥룡덕성아파트어린이놀이터	성산1길 21-1	27,028	
21	금학e-편한세상어린이놀이터	우금티로 580	82,212.40	
22	교동대우아파트어린이놀이터	무령로 169-5	34,181.33	
23	공주신금우남퍼스트빌어린이놀이터(2동)	번영2로 48-12	22,021.84	
24	공주신금우남퍼스트빌어린이놀이터(7동)	번영2로 48-12	84,238.16	
25	경일아파트어린이놀이터	웅진절골 3길 25	12,718	
26	청실아파트어린이놀이터	백제문화로 2151	25,508	
27	신한1차아파트어린이놀이터	연수원길 115-21	29,681.48	
28	신한2차아파트어린이놀이터	연수원길 116	18,490.90	
29	대웅맨션어린이놀이터	월성산 1길 19-2	13,278	

○ 학교정화구역 현황(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 65개소

연번	시설명	주소	비고
1	공주중동초	웅진로 146-5	
2	공주금학초	공주고담길19	
3	태봉초	원태봉길57	
4	공주봉황초	오거리길5	
5	호포초	전진배길313	
6	신관초	번영1로 193	
7	공주교동초	용당길 69-6	
8	공주신월초	번영1로 193	
9	이인초	이인면 은행길 56	
10	주봉초	이인면 검바위로 540	
11	탄천초	탄천면 통산로 168	
12	계룡초	계룡면 영규대사로 459	
13	경천초	계룡면 신원사로 112	
14	반포초	반포면 반포초교길 97	
15	학봉초	반포면 동학사 1로 141-10	
16	의당초	의당면 의당초교길 49	
17	수촌초	의당면 윗태실길 1-8	
18	정안초	정안면 정안중앙길 79	
19	석송초	정안면 마래섭들길 56	
20	우성초	우성면 동대리길33	
21	귀산초	우성면 귀산실81-15	
22	상서초	우성면 우성실 137-37	
23	호계초	사곡면 마곡사로 149-12	
24	마곡초	사곡면 운정길 19-10	
25	신평초	신평면 신평길 50-11	
26	유구초	유구읍 유구초교길 12	

연번	시설명	주소	비고
27	덕암초	유구읍 금계산로 943	
28	구산초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61-1	
29	교대부설초	하선길 83	
30	공주중	왕릉로 111	
31	봉황중	금벽로 301	
32	공주여자중	용당길 54	
33	유구중	유구읍 중앙1길 49-10	
34	정안중	정안면 정안중앙실 89-6	
35	우성중	우성면 구례말길 86	
36	반포중	반포면 원당1길 28	
37	사곡중	사곡면 마곡사로 293-106	
38	탄천중	탄천면 통산로168	
39	이인중	이인면 금광로 12-5	
40	영명중	영명학당2길 33	
41	공주북중	제민천1길 113	
42	경천중	계룡면 어사길 2	
43	공주사대부중	봉황로 75	
44	공주생명과학고	금벽로 317	
45	공주고	공주고담길 2	
46	공주여자고	공주여고길 14-1	
47	공주마이스터고	유구읍 중앙1길 17-12	
48	충남과학고	반포면 금벽로	
49	공주영명고	영명학당길 2길 33	
50	공주정보고	미근동길 29	
51	공주금성여고	무령로 103	
52	한일고	정안면 어물길 81	
53	공주대부설고	봉황로 75	
54	공주정명학교	장기면 장척로 116-14	
55	공주대학교	공주대학로 56	
56	공주교육대학	웅진로 27	
57	풍덕유치원	대통1길 22	
58	솔애유치원	뱀새울길 69	
59	근화유치원	중동 성당실9	
60	원효유치원	봉황산2길 16	
61	자람터유치원	신금1길 62-9	
62	숲생태유치원	반포면 외송2길 46	
63	공주영상대유치원	정안면 화봉평정길 48	
64	공주사대부설	우금미로 753	
65	신관유치원	번영1로 97-9	

○ 버스정류장 현황(표시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23개소

연번	버스정류소명	위 치	비고
1	공주고등학교	산성지물 앞, 맞은편	칸막이형
2	공주시청	시청 앞	칸막이형
3	공주교육대학교	교대정문 앞	칸막이형
4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교대부설초 앞	칸막이형
5	공주여고	공주여고 옆	칸막이형
6	공주경찰서	웅진동 청실아파트 앞	칸막이형
7	시장	한양정육점 앞	칸막이형
8	구터미널	삼성전자 대리점 앞, 건너편	칸막이형
9	공산성	연문광장 앞	칸막이형
10	공주중학교	공주중학교 건너편	칸막이형
11	무령왕릉	금성여고 후문 앞	칸막이형
12	옥룡주공아파트	옥룡주공아파트 앞, 건너편	칸막이형
13	공주대옥룡캠퍼스	공주대옥룡캠퍼스 앞	칸막이형
14	종합버스터미널	종합터미널 앞, 건너편	칸막이형
15	신관주공 1단지	카니발노래방 앞	칸막이형
16	신관주공 2단지	신관주공2단지 입구(구도로)	칸막이형
17	전막	전막 양쪽	칸막이형
18	공주생명과학고	공주생명과학고 앞	칸막이형
19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정문 옆	칸막이형
20	신관주공3단지	신관주공3단지 앞	칸막이형
21	새뜸현대3차아파트	새뜸현대3차아파트 앞	칸막이형
22	새뜸현대4차아파트	새뜸현대4차아파트 앞	칸막이형
23	곰나루아파트(종점)	대아/주공4차아파트 앞	칸막이형

○ 택시승차대 현황(표시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1개소

연번	택시승차대명	위 치	비고
1	종합버스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 옆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현황(표시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 - 17개소

연번	가스충전소명	주 소	비고
1	차에너지	차령로 1860	
2	강변LPG충전소	석장리길 35	
3	백룡LPG충전소	차동로 1791	
4	(주)지탑 신공주충전소	우성면 연미산고개길 44	
5	공주휴게소충전소(당진방향)	당진영덕고속도로 130	
6	공주휴게소충전소(대전방향)	당진영덕고속도로 129	
7	유구농협엘피지충전소	금계산로 477	
8	오송가스충전소	우금티로353	
9	원더우먼충전소	금벽로1749	
10	(주)지축에너지공주지점주유소	차령로 867	
11	금학엘피지충전소	우금티로 468	
12	공주LPG충전소	창벽로 200-4	
13	정안상행충전소	장원장자울길 120	
14	정안하행주유소지점	정안면 전평리 5-5	
15	이인충전소(상행)	이인면 이인리 3-16	
16	탄천충전소(하행)	탄천면 장선리 151-6	
17	(주)재영 마암LPG충전소	금벽로 1492	

검상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공주시 고시 제2012-151호(2012.12.03.)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기간 연장과 건축물에 대한 허용 용도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없음)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검상농공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다. 면 적 : 396,975.0m²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396,975.0m ²		
기	준 공 단 지		298,533.0m ²		
솔	브 레 인		84,802.0m ²		
아	세 아 산 업 개 발 (주)		13,640.0m ²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 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검상농공단지(계획입지로)로 지정변경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솔 브 레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3 ○ 시 행 자 : 대표 정지완
아세아산업개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12 아세아빌딩 2층 ○ 시 행 자 : 대표 서효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변경)

- 기 정 : 2007년 ~ 2011년 12월 31일
- 변 경 : 2007년 ~ 2013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업체별	유치업종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396,975.0		396,975.0	100.0	
	합 계	321,222.3		321,222.3	80.9	
-	기 준공단지 (·92.12.30)	255,418.5		255,418.5	64.3	
솔 브 레 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0,953.1		30,953.1	7.8	
		21,210.7		21,210.7	5.3	
아세아 산업개발(주)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13,640.0		13,640.0	3.4	
기타(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75,752.7		75,752.7	19.1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96,975.0		396,975.0	100.0		
산업시설용지	321,222.3		321,222.3	80.9		
지원시설용지	19,816.4		19,816.4	5.0		
공공시설용지	50,417.3		50,417.3	12.7		
도로	도로	31,033.5		31,033.5	7.8	
	주차장	2,039.8		2,039.8	0.5	
	관리사무소	6,087.1		6,087.1	1.5	
	오·폐수처리장	9,124.0		9,124.0	2.3	
	배수지	2,132.9		2,132.9	0.5	
녹지시설용지	5,519.0		5,519.0	1.4		
완충녹지	5,519.0		5,519.0	1.4		

7.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교통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변경	7	2,684	31,033.5				1	352	5,263.0	6	2,332	25,770.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김상동 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11	주차장	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나. 공간시설계획 (변경없음)

1)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519.0	-	5,519.0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김상동 봉정동 533-3번지 일원	5,020.2	-	5,020.2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김상동 297-10번지 일원	498.8	-	498.8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	2,132.9	-	2,132.9		

라. 방재시설계획 (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3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오·폐수 처리장	검상동 726-3	9,124.0	-	9,124.0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m ³ /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539.1	539.1	-	
공 업 용 수	453.0	453.0	-	
생 활 용 수	86.1	86.1	-	

나.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구 분	오수량(m ³ /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195.6	195.6	-	
공업폐수	178.1	178.1	-	
생활오수	17.5	17.5	-	

다.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연간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0,145.2	20,145.2	-	
생산시설	20,031.0	20,031.0	-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114.2	114.2	-	

라.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통신수요(회선)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1,736	1,736	-	
산 업 시 설	1,447	1,447	-	
공 중 전 화	289	289	-	

마.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연간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573	2,573	-	
생산시설	2,573	2,573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검상 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솔 브 레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3 ○ 시 행 자 : 대표 정지완
아세아산업개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12 아세아빌딩 2층 ○ 시 행 자 : 대표 서효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농공단지 개발

나. 개요

-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솔브레인 주요업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아세아산업개발(주) 주요업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나. 면적 : 396,975.0m²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396,975.0m ²		
기	준	공	단	지	
			298,533.0m ²		
솔	브	레	인		
			84,802.0m ²		
아	세	아	산	업	개
			발(주)		
			13,640.0m ²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7년 ~ 2011년 12월 31일

○ 변경 : 2007년 ~ 2013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6,975.0		396,975.0	100.0	
공업지역	396,975.0	-	396,975.0	100.0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22,114.0	-	22,114.0	-	
준공업지역	374,861.0	-	374,861.0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중로	변경	7	2,684	31,033.5	-	-	-	1	352	5,263.0	6	2,332	25,770.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검상동 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11	주차장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2) 공간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297-10번지 일원	498.8	-	498.8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	2,132.9	-	2,132.9		

4) 수질오염방지사설 (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사설

○ 수질오염방지사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3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오·폐수 처리장	검상동 726-3	9,124.0	-	9,124.0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공주 2 3 2 4	검상 농공단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공주시 검상동 · 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396,975.0	-	396,975.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위 치	획지			비 고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21,222.3		321,222.3	-	321,222.3	
①	-	255,418.5	공주시 검상동 725-9번지 일원	255,418.5	-	255,418.5	
	2-1	52,163.8	공주시 검상동 · 봉정동 299-1번지 일원	30,953.1	-	30,953.1	
	2-2		공주시 검상동 · 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21,210.7	-	21,210.7	
	2-3		공주시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	-	-	
	3-1		13,640.0	공주시 검상동 173번지 일원	13,640.0	-	13,640.0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9,816.4		19,816.4	-	19,816.4	
③	1	19,816.4	공주시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19,816.4	-	19,816.4	

나)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9,383.8		19,383.8	-	19,383.8	
②	2	6,087.1	공주시 검상동 729-5번지	6,087.1	-	6,087.1	관리사무소
	3	9,124.0	공주시 검상동 726-3번지	9,124.0	-	9,124.0	오폐수처리장
	4	2,132.9	공주시 검상동 725-2번지	2,132.9	-	2,132.9	배수지
	11	2,039.8	공주시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주차장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가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용지 ①-1	검상동 725-10번지 일원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2-1	검상농공단지 검상동 298-3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분류(코드번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2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7조)	
		높 이	4층(20m) 이하	
①-2-2 ①-3-1	검상농공단지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분류(코드번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2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7조)	
높 이	기정	4층(20m) 이하		
	변경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③-1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 7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 2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제5호에 의거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변경한 사항임

다) 공공시설용지 -관리사무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②-2	검상동 729-5번지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에 의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에 의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 7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 250%이하
		높 이	-	-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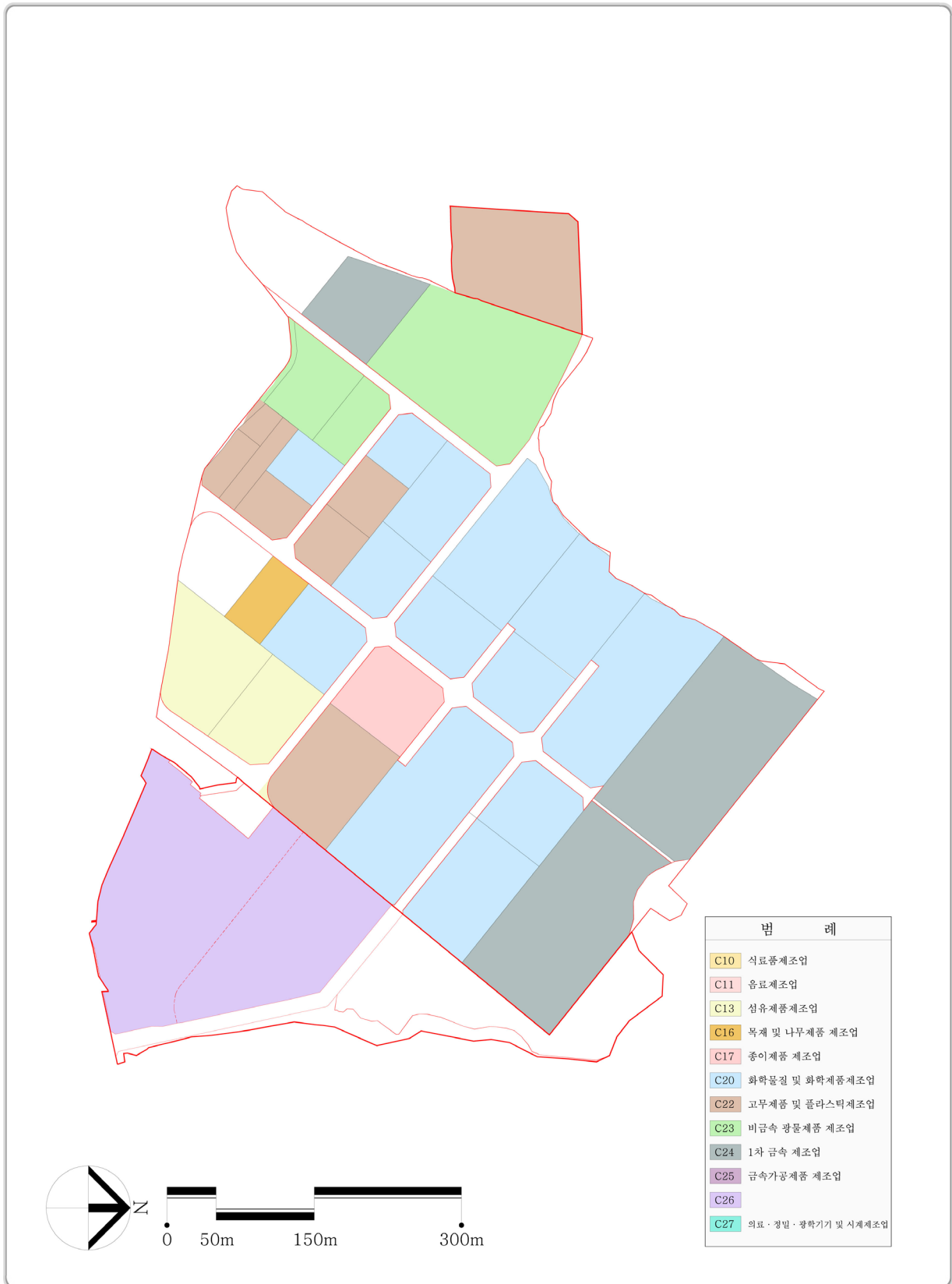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제5호에 의거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변경한 사항임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계재생략

<별첨 1>

<업종별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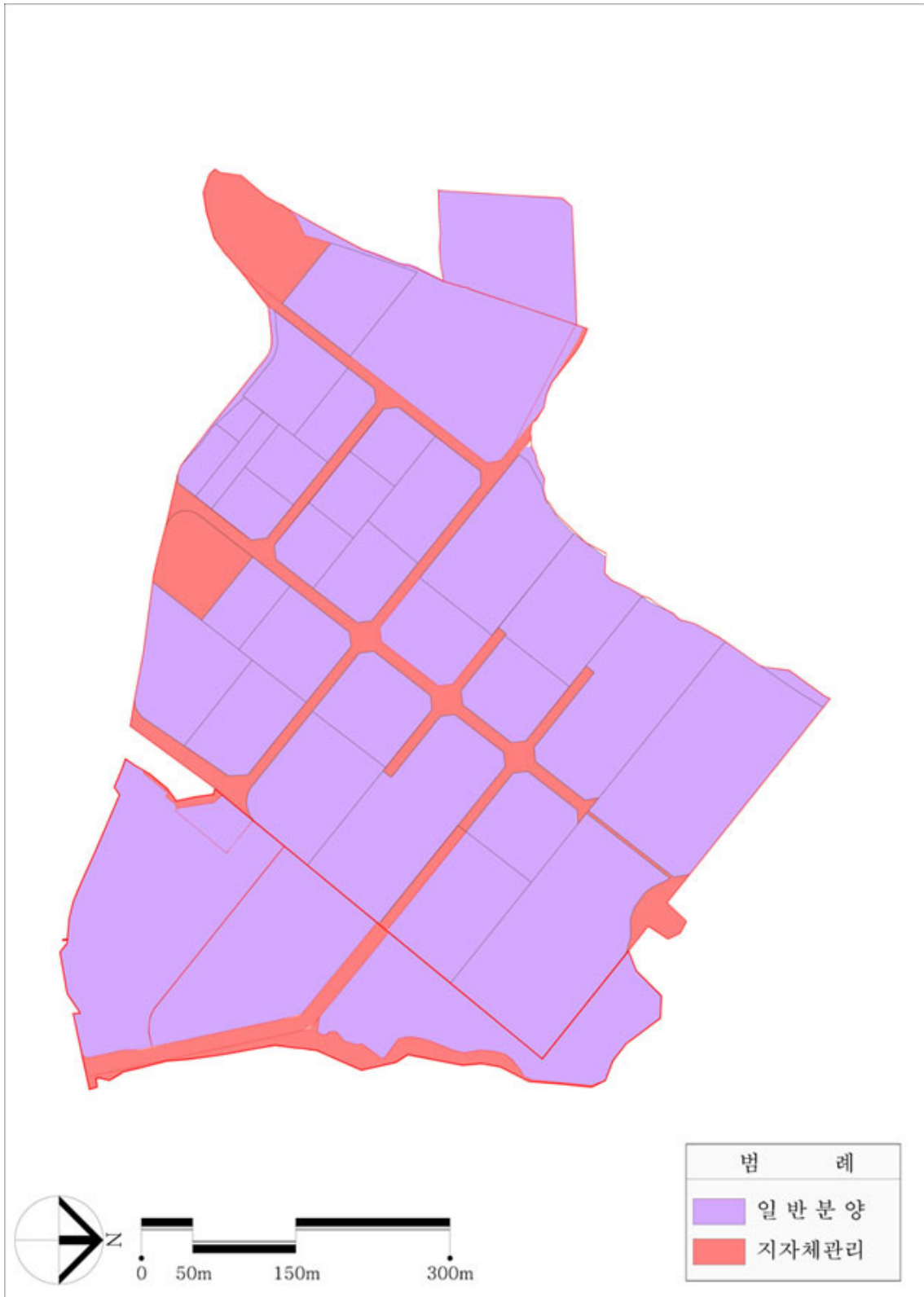
<별첨 2>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별첨 3 >

< 관리처분계획도-변경 >



공주시 공고 제2013-853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회의시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및 실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실비변상금의 지급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실비변상의 정의에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여비를 포함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1조)
-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 수정(안 제2조, 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1) 주소 :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시정담당관)
- (2) 연락처 : 전화 : 041) 840-2042 FAX 041) 840-23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주시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지급에”로 한다.

제2조 중 “각 위원회”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비)”를 “(실비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공무원”을 “공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출석”을 “참석”으로, “범위안에서 일비를”을 “범위에서 수당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웅진백제역사문화관)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웅진동 57번지외 9필지상 웅진백제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웅진백제역사문화관)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57번지외 9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웅진백제역사문화관)
 - 명 칭 : 웅진백제역사문화관 건립공사
3. 시행자 : 공주시장
4.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웅진백제 역사문화관)	4,990	건축 1동 건축면적 : 144.59㎡ 연 면 적 : 1,437.43㎡	

5. 사업기간 : 2012. 11 ~ 2013. 6.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 명 (법인명)	공주시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307-83-03046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시행자	공주시장						
	소재지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준 공 내 용								
사 업 명 칭		웅진백제역사문화관 건립						
사 업 목 적		웅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역사문화관 건립						
사 업 위 치		공주시 웅진동 57번지 일원		사업면적(㎡)		4,990㎡		
시 행 방 법		도급시행		시행기간		2012. 11 ~ 2013. 6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계	답	전	도로	묘	
		면적(㎡)	4,990	1,169.5	1,602.6	302.2	1,915.7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건축면적				기타	
		면적(㎡)	1동 건축면적 : 144.59㎡(건폐율 : 2.89%) 연 면 적 : 1,437.43㎡(용적률 : 2.54%)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해당사항 없음					
		개 요	해당사항 없음					
소요사업비		5,400백만원		공사완료일		2013. 5. 27		

2013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